

4-6. 지자체 채무 현황

- ☐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순창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9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20년도 현재액 E=(A+B)
			계 (B=C-D)	발생액 (C)	소멸액 (D)	
합 계		0	0	0	0	0
일 반 회 계		0	0	0	0	0
특 별 회 계	소 계	0	0	0	0	0
	상수도사업 특별회계	0	0	0	0	0
	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	0	0	0	0	0
	새농촌육성 기금특별회계	0	0	0	0	0
	기반시설 특별회계	0	0	0	0	0
	공공주택 특별회계	0	0	0	0	0
		0	0	0	0	0
		0	0	0	0	0
기 금 회 계		0	0	0	0	0

※ 지방채무는 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(BTL 지급액 제외)

※ '20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(원금 기준)

지방채무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6	2017	2018	2019	2020
채무현황	0	0	0	0	0
인구수	29,949	29,698	29,209	28,382	27,810
주민 1인당채무(천원)	0	0	0	0	0

※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

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

(단위 : 천원)

